

보도자료



보도	2020.2.5(수) 조간	배포	2020.2.4(화)
----	----------------	----	-------------

책 임 자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02-2100-2850)	담 당 자	이 종 림 사무관 (02-2100-2853) 김 나 혜 사무관 (02-2100-2854)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이 경 식(02-3145-7580)		박 상 준 팀장 (02-3145-7611)

제 목: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 발표)」에 따라, 환매조건부(RP)*로 자금을 조달할 때 일정 비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20.7.1일부터 시행)
 - *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 매매)란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거래
-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범위, 보유해야 하는 비율 및 비율 산정 기준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5-23조의2).

1 추진배경

- □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 발표)」의 후속조치로 RP 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가 유동성 관리를 위해 보유해야 할 현금성자산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규정변경예고 합니다.
 - **현금성자산 보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영 제181조제3항제2호)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19.12.31. 공포, '20.7.1 시행)이 **개정**되었고,
 -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RP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자금차입자)가 보유해야 하는 현금성 자산 인정범위, 비율 및 비율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1]
- ①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 제도개선 발표 당시('19.3월) 현금성 자산의 예시로 든 **현금, 예·적금,** (외화예금, MMDA*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 외에도,
 -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 고객 예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 수시입출금 가능
 - ** 장래 대출을 약속하는 구속력있는 대출약정
 -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 MMW)**, 은행·증권사·증권 금융회사 발행어음(수시물)을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 고객자금·증거금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자금은 제외
 - ** MMT(Money Market Trust): 특정금전신탁상품 중 1일물 또는 시장매각을 통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운용하는 수시입출식금전신탁 상품 MMW(Money Market Wrap): 투자일임계약상품 중 투자자의 단기자금운용 수요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예치, CP, 콜론, RP, 채권 등 유동자산 등으로 일임재산을 운용
 - 단, 수시입출식 MMT, MMM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30% 이상 보유 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30% 만큼 현금화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 (금투업규정 제4-77조제14호 및 제4-93조제20호) 현금, 국채, 통안채, RP, 단기 대출, 수시입출예금, 잔존만기 7영업일이내 CD·예금, 지방채, 특수채 ⇒집합투자 재산의 30%이상 유지
- ②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의무 비율*을 차등화하였습니다.
 - ※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에서 발표된 비율
 - 만기가 짧을수록 **차환리스크**가 큰 것을 반영하고, 익일물보다 만기를 길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차등 적용**하되,
 - 시장참가자들의 적응기간을 위해 시행('20.7.1일부터) 후 3분기 동안 ('20.3/4~'21.1/4)에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적용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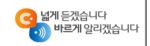
- ③ 현금성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 매월 직전 3개월의 월별 RP 매도 평균 잔액 중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 **규정변경 예고**('20.1.31~3.11), **금융위 의결**('20.4월중) 등을 거쳐 '20.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 시행 후 3분기 동안('20.3/4~'21.1/4)에는 보유비율을 완화하여 적용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1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세부 내용

- ① 현금성자산의 인정 범위(안 제5-23조의2제1항)
-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현금, ❷예·적금(외화예금 포함), ⑤양도성예금증서, ④당일 인출가능한 대출약정(커미티드 크레딧 라인), ⑤증권금융회사 예수금, ⑥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 MMW), ②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수시물)
- 단, ๑수시입출식 MMT, MMW의 경우 고유동성 자산을 3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30% 만큼 현금화자산으로 인정
- ② 보유 의무 비율(안 제5-23조의2제2항)
 - 만기가 짧을수록 **차환리스크**가 큰 것을 반영하고, 익일물보다 만기를 길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차등 적용**
 - 시장참가자들의 적응기간을 위해 시행('20.7.1일부터) 후 3분기 동안 ('20.3/4~'21.1/4)에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적용

구분	익일물 (개방형 거래 포함)	기일물		
거래만기	1일	2~3일	4~6일	7일 이상
현금성자산 보유비율('21.2/4~)	20%	10%	5%	0%
(과도기간: '20.3/4~'21.1/4)	10%	5%	3%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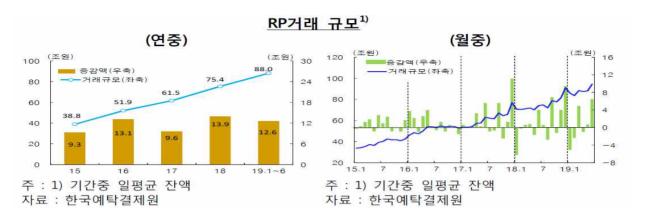
- ③ 현금성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 규모(안 제5-23조의2제2항)
 - 매월 직전 3개월의 월별 RP 매도 평균 잔액 중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필요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산정
 - ※ 예시: (익일물 RP) '18.7월 ⇒ 직전 3개월('18.4월, 5월, 6월)의 월별 익일물 RP 매도 평균 잔액(50조원, 60조원, 70조원) 중 최고 금액인 70조원이 기준

만기별 월평균 잔액 18.4		18.4 18.5		18.7	기준금액	현금성자산	필요 현금성자산
(조원)	10.7	10.5	18.6	10.7	11467	보유비율	규모
익일물	50	60	70	40	70	20%	14
2~3일물	40	30	20	35	40	10%	4
4~6일물	20	30	40	20	40	5%	2

- □ 최근 RP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전문투자형 사모편드 등**이 RP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증권을 사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운용하는 거래를 반복하며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음
 - * (RP 잔액, 조원) ('15년말) 43.8 → ('17년말) 83.8→ ('19년말^e) 119.1
 - ** (증권사 RP 일평균 매도액, 조원) ('15년말) 22.7 → ('17년말) 31.7→ ('19년말^e) 66.9 (자산운용사 RP 일평균 매도액, 조원) ('15년말) 4.1 → ('17년말) 19.0→ ('19년말^e) 39.7
 - 이러한 RP 거래에서 **초단기**(만기1일)로 **차입**한 자금을 대부분 당장 유동화하기 어려운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에 운용
 - 펀드 투자자들의 상환 요구가 있거나, RP 만기 도래 시 차환 (rollover)이 안 되는 경우 유동성이 부족하여 상환을 하지 못 하게 될 가능성
 - 특히, RP 거래가 익일물(만기1일) 위주로 이루어져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시장충격 발생 시 RP 매도자는 바로 다음날 만기가 집중되고, 상환에 쓸 수 있는 현금도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됨
 - * 익일물 RP 거래 비중('18년 일평균 거래액 기준) : 93.4%
- □ RP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중권을 급매하여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 중권 가격이 급락하고,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
 - RP 매도자로 하여금 갑작스러운 **상환 요청이나 자금조달이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하게 유동성을 관리하도록 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필요**
- ⇒ 이에 RP 매도자가 차입규모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게 하는 개선을 추진

RP 시장 개요

□ (거래 규모) 2019년 상반기(일평균 잔액) RP 거래규모가 88.0조원 으로 전년대비 12.6조원 증가



- (거래주체)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주로 RP매도를 통해 자금 조달
- RP를 통한 자금공급(증권매수) 기관은 자산운용사, 은행신탁, 국내 은행(고유계정) 등의 순

				시장 3	참가자별	RP거래 규	모 ¹⁾
	11	(RPull	도)		(조원)		
	'15	'16	'17	'18	′19.1~6		'15
국내은행	4.2	4.3	3.3	2.0	1.0	자산운용사	14.
외은지점	0.9	0.7	0.5	0.7	1.0	국내은행	3.1
증권사	22.7	32.0	31.7	43.5	53.5	증권금융	1.7
증권신탁	3.2	1.7	3.0	4.2	4.0	증권신탁	6.2
자산운용사	4.1	9.4	19.0	21.2	25.8	은행신탁	7.5
기타	3.7	3.9	3.9	3.8	2.7	기타	5.6
합계	38.8	51.9	61.5	75.4	88.0	합계	38.

주 : 1) 기간중 일평균 잔액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RP매입)

(조원)

	′15	'16	'17	′18	′ 1 9.1~6
자산운용사	14.7	19.4	22.7	24.4	26.2
국내은행	3.1	5.5	6.6	11.5	17.4
증권금융	1.7	4.2	5.7	7.3	6.9
증권신탁	6.2	5.7	4.2	4.0	4.5
은행신탁	7.5	11.3	14.3	19.0	21.5
기타	5.6	5.9	7.9	9.0	11.5
합계	38.8	51.9	61.5	75.4	88.0

주 : 1) 기간중 일평균 잔액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 □ (만기) RP거래의 익일물 비중이 90% 이상으로 익일물 편중 지속
- ㅇ 기일물의 경우 2019년 상반기 3.5%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미미

RP거래의 만기별 비중¹⁾

						(%)
		15	'16	'17	'18	'19.1~6
익일물		91.7	92.3	93.2	93.8	93.9
기일물		3.3	3.6	3.2	3.0	3.5
	2~7일	3.0	3.3	2.7	2.4	2.9
	8일 이상	0.3	0.3	0.5	0.6	0.6
개방형		5.0	4.1	3.6	3.3	2.5

주 : 1) 기간중 일평균 거래금액 기준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